

◎ 교육부공고 제2017-169호

「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,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6월 19일

교육부장관

## 1. 개정이유

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응시수수료를 인하하고,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의 법적근거 및 제출할 증빙서류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(LEET) 응시수수료 인하

- (현행) 270,000원 → (변경) 248,000원

나.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의 법적근거 및 제출할 증빙서류 수정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받는 “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”의 법적근거를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호 및 제10호로 하고,
- 수급자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가구원도 확인서(증명서) 발급이 되므로 “가족관계증명서”, “주민등록등본” 제출은 불필요하여, 해당 서류 제출 규정 삭제

- “한부모가족 증명서” 제출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는 “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”의 법적근거를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로 명확화

다. 재검토 기한을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

### 3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- 2) 성명 및 주소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, 대표자 성명 및 주소)

나. 제출방법 : 우편, FAX(모사전송)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

- 1) 전화 : 044-203-6255·6256, FAX : 044-203-6485
- 2)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412호 대학학사제도과 (우 : 339-012)

## 「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금액,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

「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금액,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항의 “270,000원”를 “248,000원”으로 한다

제2조 제2항 제1호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그의 자녀”를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“차상위계층” 복지급여수급자 및 그의 자녀”를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“차상위계층” 우선돌봄 자격자 및 그의 자녀”를 “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”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재검토기한) 교육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[별표]

**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 증빙서류(제2조 제3항 관련)**

대 상	제출서류	발 급 처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	○수급자 증명서	○ 시·군·구청 ○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(구, 주민센터) ○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해당 증명서 발급 기관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	○본인이 “차상위계층 복지급여” 수급자인 경우 : 수급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행정기관 발급 확인서 또는 증명서  ※(예) 자활근로자 확인서,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, 장애인연금·장애수당·장애이동수당 대상자 확인서(차상위부가급여 또는 차상위 해당자) 등  ○ “차상위계층 복지급여” 수급자의 가구원 또는 “차상위계층” 인 경우: 차상위계층 확인서	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서류만 인정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	○한부모가족증명서	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응시수수료 등) ① 『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24조제4항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<u>270,000원</u>으로 한다.</p> <p>② 적성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.</p> <p>1. 「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」에 따른 <u>수급권자 및 그의 자녀</u></p> <p>2. 「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」에 따른 "<u>차상위계층</u>" 복지급여수급자 및 <u>그의 자녀</u></p> <p>3. 「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」에 따른 "<u>차상위계층</u>" 우선돌봄 자격자 및 <u>그의 자녀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2조(응시수수료 등) ① 『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24조제4항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<u>248,000원</u>으로 한다.</p> <p>② 적성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.</p> <p>1.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에 따른 <u>수급권자</u></p> <p>2.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에 따른 <u>차상위계층</u></p> <p>3. 「<u>한부모가족지원법</u>」에 따른 <u>지원대상자</u></p> <p>제5조(재검토기한) <u>교육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</p>

**[별표]**

**응사수수로 면제대상자 증빙서류(제2조제3항 관련)**

대 상	제출서류	발급처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수급권자 또는 그의 자녀	o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 o 가족관계증명서(본인)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	o 사군구청 o 읍·면·동 주민센터 o 국민건강보험센터 등 해당 증명서 발급기관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1호의 차상위계층 해당자 또는 그의 자녀 ※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는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, 차상위 자활, 차상위 장애수당,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, 한부모가족지원 수혜자로 함	o 차상위계층 해당 증명서(확인서) 1부 o 가족관계증명서(본인)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	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서류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가 아니나,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%이하인 가구의 지원자 ※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지원자	o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1부 o 가족관계증명서(본인)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	

※ 본인이 대상자가 아닌 자녀의 경우 ‘생계를 같이 하는 자’ 에 한함  
‘생계를 같이 함’ 의 의미는 주민등록상으로 거주지가 일치함을 의미함

**[별표]**

**응사수수로 면제대상자 증빙서류(제2조제3항 관련)**

대 상	제출서류	발 급 처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	o 수급자 증명서	o 시·군·구청 o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구, 주민센터) o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해당 증명서 발급기관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	o 본인이 “차상위계층 복지급여” 수급자인 경우 : 수급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행정기관 발급 확인서 또는 증명서 ※(예) 자활근로자 확인서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, 장애인연금·장애수당·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(차상위부가급여 또는 차상위 해당자) 등 o “차상위계층 복지급여” 수급자의 가구원 또는 “차상위계층”인 경우 : 차상위계층 확인서	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서류만 인정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	o 한부모가족증명서	

<삭제>

<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	전화 (044) 203-6255·6256 FAX (044) 203-6485
-------------	--